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4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4509 공매대금배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항소심당사자	1. ○○시장
피고, 피항소인	2. ○○○○○○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7239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1) 피고 ○○시장이 2021. 12. 17. ○○시 D 임야 93,688㎡ 중 E의 지분 6분의 1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배분처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B, C에게 배분한 각 264,773,700원 중 각 73,665,41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장이 2021.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47,330,820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1) 피고 ○○○○○○공사가 2021. 12. 17. ○○시 D 임야 93,688㎡ 중 E의 지분 6분의 1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배분처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B, C에게 배분한 각 264,773,700원 중 각 73,665,41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공사가 2021.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47,330,820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1.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4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18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매대금배분 처분 취소를 구하고, 위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매대금배분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예비적 피고인 피고 공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주위적 피고인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피고 시장은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 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 지위에 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4

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본문 하4, 3행의 "E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3나15963) 계속 중에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E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 12. E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3누15963), E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본문 하2, 1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18, 19호증'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E과 망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등기이므로 무효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1. 5. 24. 해제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다. E이 참가인들 및 원고를 상대로 공매대금 배분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관련사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4

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사건의 판결에서 ① E이 이 사건 각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망인과 약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망인은 E이 이 사건 각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거나 보장한 매매 차익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6억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 ③ 망인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2021. 5. 24.경 위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④ E이 참가인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억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각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7, 2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E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6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권도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4

재판장 판사 심○○

판사 차○○

판사 이○○